

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위반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(앞쪽)

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1. 기본 사항

|     |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|  |
|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|
| 수증자 | ① 성명       |          | ② 주민등록번호 |  |
|     | ③ 주소       | (전화번호: ) |          |  |
|     | ④ 증여자와의 관계 |          | ⑤ 전자우편주소 |  |
| 증여자 | ⑥ 성명       |          | ⑦ 주민등록번호 |  |
|     | ⑧ 주소       | (전화번호: ) |          |  |

2. 신고 내용

|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|
|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|
| ⑨ 수증일 | ⑩ 재산종류 | ⑪ 증여재산가액 | ⑫ 비고 |
|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|
|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|
|       |        |          |      |

|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|--|
| ⑬ 과세특례 위반코드 |  |
|-------------|--|

3. 과세특례 위반으로 결정한 증여세액

|        |  |
|--------|--|
| ⑭ 증여세액 |  |
|--------|--|

4. 이자상당액

|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⑮ 일수                   |  |
| ⑯ 이자율                  |  |
| ⑰ 이자상당액<br>(⑭ × ⑮ × ⑯) |  |

5. 납부할 세액

|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|--|
| ⑱ 납부할 세액 (⑭ + ⑰) |  |
|------------------|--|
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5제13항에 따라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위반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세무대리인 (서명 또는 인)

(관리번호: ☎ 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방법

1. “㉓ 과세특례 위반코드 “는 아래와 같습니다.

| 사후관리 위반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관련 조문                  | 코드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2. 2년 이내에 창업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5제6항제1호 | 01 |
| 2. 창업자금으로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5제6항제2호 | 02 |
| 3.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5제6항제3호 | 03 |
| 4. 창업자금을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5제6항제4호 | 04 |
| 5.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5제6항제5호 | 05 |
| 6.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5제6항제6호 | 06 |
| 7.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<br>* 창업한 날의 근로자수 - (창업을 통하여 신규고용한 인원수 - 10명) |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5제6항제7호 | 07 |

2. “㉔ 증여세액 “란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0조의5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증여세액을 적습니다.
3. “㉕ 일수 “란에는 당초 증여받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을 적습니다.
4. “㉖ 이자율 “란에는 1일 10만분의 22를 적습니다.  
\*2022.2.14. 이전 기간은 10만분의 25